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2.12.24] [국무총리훈령 제599호, 2012.12.24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훈령에서 "국가대표포털"이란 국민이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(이하 "전자정부서비스"라 한다)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포털(korea.go.kr)을 개선하여 구축한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.

제3조(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) ① 국가대표포털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(이하 "추진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법ㆍ제도의 정비 등 운영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
2. 가정생활, 공공안전, 기업ㆍ경제, 산업활동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종류별 특화서비스 발굴 및 구축에 관한 사항
3. 「전자정부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구축한 포털 및 사이트의 회원정보를 묶어 그 회원이 해당 포털 및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 인증 및 각종 행정서비스의 연계 확대에 관한 사항
4.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콘텐츠 발굴과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
5. 국가대표포털의 기능개선 등 고도화 사업에 관한 사항
6. 국가대표포털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국가대표포털의 기능개선 추진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실무작업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단장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기획관이 되고, 실무작업팀장 및 팀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.

제5조(자문위원회) ①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자문위원회(이하 "자문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전자정부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.

④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협의회의 구성ㆍ운영) 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진단 소속 공무원과 문화체육관광부,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③ 단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관계기관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국무총리실 등 관련 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계기관 등에의 업무협조 요청)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조사ㆍ연구의 의뢰) ① 추진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포상 추천)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중 국가대표포털의 기능개선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보수 등)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.

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 <제567호,2011.4.22>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<개정 2012.12.24>

부칙 <제599호,2012.12.24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